

신청기관 :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심사절차 규정(러시아를 중심으로)

김중원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I 서론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90여개국이며 이중 대만, 그리스,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40여개국에 이른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의도적인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복무자의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복무기간을 현역 군복무 기간보다 길게 하고 있다.¹⁾ 이 중 러시아는 대체복무제를 가장 빠르게 시행한 나라이다. 그 시초는 메노나이트(16세기 기독교 종교개혁 시기에 등장한 교단으로 일명 재세례파라 한다.) 신도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8세기 유럽의 메노나이트 신도들은 종교 박해를 피해 러시아로 이민했으나 러시아 정부의 군인징집 명령에 반대하며 오랜 기간 동안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1881년 메노나이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로서 '산림관리프로그램' 제도를 얻어냈다. 이후 1919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병역 면제'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다. 그러나 1939년 러시아는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했으며 이후 1993년 국민투표로 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에서는 만일 군복무가 러시아 시민의 신념이나 신앙에 모순된다면 대체복무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러시아 시민의 권리가 확립되었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실현하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 혹은 이와 관련한 장치 자체는 만들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아 수많은 병역기피자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2002년 러시아 하원 의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는 자신이 종교적 이유나 평화주의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병역 복무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을 더 근무해야 했다(현재는 현역 1년 기간보다 1.5배 혹은 1.75배가 더 긴 18개월이거나 21개월이다.) 또한 대체복무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아 건설공사 등의 일이 힘든 기피직종에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갈 가능성도 높았다.²⁾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체복무인원은 2011년 봄에 200명의 대체복무자가 더해져 2011년 7월 기준으로 대체복무자는 약 2,600명에 이르렀다.³⁾

1 서울신문(2018), 「러시아 복무기간, 현역의 1.5배... 한국에 적용하면 최장 3년」, 2018. 6. 28.

2 세르게이 포노마료프(2004), 「러시아 대체복무의 허실을 밝힌다.」, 당대비평 27

3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2011), 「Responses to Information Requests(RIRs)」, 2011. 11. 14.

본 보고서에서는 대체복무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그 순서로는 먼저 병역 대체복무 시행의 근거 법령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대체복무 대상 범위와 신청조건, 기간, 심사 및 절차, 대체복무자의 지위와 혜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II 병역 대체복무 관련 법령 및 심사절차

1. 병역 대체복무 시행에 대한 근거 법령

러시아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는 병역활동을 대신하여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을 하는 특별한 일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연방 헌법 59조에 근거한 내용으로 1항에서는 ‘국방은 러시아연방 국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3항에서는 ‘러시아연방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체복무법에서도 대체복무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동법 2조 ‘징집에 따른 현역복무를 대체복무로 대체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가지 경우에 있어서 시민들은 현역복무를 대체복무로 대신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현역복무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에 반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토착민이거나, 전통적 생활 방식을 이끌거나 전통생활양식대로 살면서 전통공예품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체복무제를 수행하는 시민의 지위와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법 1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지위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에 따라 제정된 대체복무법에 의해 결정이 되고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러시아 노동 법규에 의해 규제된다.

2. 병역 대체복무제의 기본 원칙

러시아의 병역 대체복무제는 1939년 폐지된 이후 1993년에 전국적인 투표로 채택된 연방헌법을 통해 평화주의, 철학적,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대체할 러시아 시민의 권리를 보장했다. 이에 따라 폐지 후 다시 인정되었던 대체복무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군복무에 적합하거나 혹은 사소한 결함이 있어도 군 복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은 대체복무로 보내질 수 있다. 둘째, 대체복무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주로 러시아연방 영토 외곽지역이며, 복무지역에 대한 결정은 노동시장이나 승인된 직종 목록을 고려하여 노동고용부에서 결정한다. 셋째, 국유기업에 한해서 대체복무가 수행된다. 넷째, 대체복무제를 선택한 시민은 자신의 주도로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업에 가담하거나 다른 조직에서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없다. 다섯째, 지역 토착민 대표들은 전통경제 및 전통공예와 관련한 조직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의 기간은 군복무 병역기간을 초과한다.

3. 병역 대체복무 대상 범위

병역 대체복무 대상에 대한 범위는 대체복무법 3조에서 1~2항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예비군에 해당하지 않는 18~27세 남성 시민은 대체복무 신청 및 승인을 통해 현역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단, 현역 병으로 소집이 되지 않은 군대 면제 사유가 있는 자, 현역병 소집이 되지 않아야 하는 자와 군대 징병유예를 부여 받은 자 등 현역복무 대상이 되지 않으면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병역 대체복무 신청 조건

대체복무법 11조에 따르면 민간인 복무와 징병에 대한 병역 대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먼저 신청기간에 대한 조건으로 당해 연도 10월부터 12월에 병역에 소집되는 경우 4월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년도 4월부터 6월에 병역에 소집되는 경우는 10월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 연기 사유를 근거로 연기를 한 경우는 병역 연기 사유의 종료일 10일 이내에 4월 1일 이후나 10월 1일 이후에 병역 대체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병역근무가 신청자의 신념이나 종교에 반한다는 내용 등의 신청이유와 상황에 대해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청자의 주장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언급할 수 있다. 신청서에 첨부되는 내용으로는 자기소개서와 함께 학교 혹은 근무지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대체 복무 승인에 도움이 될 만한 추가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병역 대체복무 담당 기관에 신청이 되면 해당 기관은 신청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신청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5. 병역 대체복무 기간

병역 대체복무에 대한 기간은 현역복무의 1.75배인 21개월과 1.5배인 18개월로 대체복무법 5조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1항에서는 현역복무보다 1.75배가 더 긴 21개월을 복무하는 경우로 연방 집행 기관과 관련 있는 기관이거나 러시아 연방 산하기관에서 복무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2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 및 기타 군대의 조직이나 군대 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복무의 1.5배인 1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두 경우를 살펴보면 군대와 연관 있는 곳에서는 18개월이고 그렇지 않은 그 외의 대체복무지에서는 21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기준은 군대 조직이나 기관과의 연관성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대체복무 시작일은 지시받은 대체복무지에 도착한 날이며, 그 날로부터 산입되어 복무기간 종료일까지가 대체복무 기간이다. 추가적으로 형사 또는 행정 처벌 및 체포 기간 동안에는 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복무지 이탈, 허가권자로부터 제공 받은 이외의 휴가, 교육 목적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휴가, 알코올 중독, 마약 또는 다른 독성 중독으로 인한 정직 기간 동안은 대체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6. 병역 대체복무 심사 및 절차

병역 대체복무 심사에 관한 조항은 대체복무법 12조에서 병역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총 7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1항에서는 대체복무 신청서는 신청자가 신청서 검토위원회 회의에 입회한 상황에서만 심사가 되며, 이를 위해 검토위원회 회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미리 공지된다.

2항에서는 검토위원회는 병역복무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에 반하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신청한다는 대체복무 신청자의 주장에 대해 다음 4가지 사항을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검토위원회 회의에서의 대체복무 신청자의 진술이고, 두 번째는 신청자의 주장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 세 번째는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추가 서류자료들이다.

3항에서는 앞서 2항에서 언급한 내용에 근거하여 검토위원회에서의 대체복무 신청서 심사는 병역 대체복무에 대한 승인 혹은 거절 의견을 제시하고 승인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신청 마감일로부터 1달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과정의 기간도 1달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대체 복무 심사 결정 방법 및 승인 기준으로는 검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한다.

4항에서는 병역 대체복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대체복무 신청기간이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신청서에 기술된 내용과 신청자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신청서에 고의로 정보를 틀리게 기입한 경우, 검토위원회 회의에 두 번 소환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 병역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대체복무를 거절하였을 경우이다.

5항에서는 대체복무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위원회 회의 시 신청자가 참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합당한 부재 사유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첫 번째 사유로는 신청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고 다음으로는 가족의 장례로 인한 장례식 참석 때문에 발생하는 부재로 그 대상은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들, 딸,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와 양부모이다. 또한 불가항력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상황과 함께 신청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 따른 불참이다. 이 외의 유효한 불참 사유로는 검토위원회와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열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검토위원회 회의에 불참할 시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6항에서는 검토위원회에서 대체복무 결정의견이 내려진 이후의 과정으로 대체복무 승인이 된 신청자는 소환장을 받고 소환장에 명시된 기일까지 신체검사 및 대체복무 업무 결정을 위한 회의소집에 응해야 한다.

7항에서는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거절결정 이후의 과정으로 대체복무를 승인 받지 못한 신청자는 현역으로 복무를 하여야 하며 검토위원회의 결정문은 결정이후로 3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만약 대체복무 거절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청자는 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토위원회의 결정은 유예된다.

7. 대체복무지

앞서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복무지는 크게 군대, 정부조직, 전통산업 등 3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대체복무법 4조에서는 대체복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연방정부 관할에 속해 있는 조직,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의 산하 조직, 군대와 군대에 속해 있는 산하 조직,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산하 조직을 언급하고 있다. 3항에서는 토착민들의 대체복무는 전통고유산업 및 경제와 관련한 조직에서 대체복무를 한다고 말하고 있다. 4항에서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검토를 통해 대체복무가 가능한 업무와 직종 목록이 공지되는데 러시아 국방부 홈페이지에 열거된 직종은 총 63개로 항공기 및 항공장치 관련 기술자와 같이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과 청소 및 설거지와 같이 단순 작업의 일도 포함되어 있다.

8. 병역 대체복무자의 지위 및 혜택

병역 대체복무자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연방 헌법 및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금 및 숙소의 경우 대체복무자는 결정된 대체복무지에서 근무하면서 대체복무 기관에서 존재하는 임금체계에 맞게 보수를 받게 되며 대체복무자에게 합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유급휴가는 러시아 연방 노동법 규정에 따라서 지급된다. 대체복무 기간 동안에는 기차, 항공, 선박, 택시를 제외한 육로교통에 대한 비용이 무료이다.

대체복무법 20조에서는 대체복무자에 대한 임금과 보험에 대한 사항을 5항에 걸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1항에서는 근무시간, 근로자 보호, 안전장비 및 작업환경 위생은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시행 및 보호되어야 한다. 2항에서는 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조직의 보수체계에 따라서 대체복무자에게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3항에서는 대체복무자의 거주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복무자의 거주지역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지역에서 대체복무를 할 경우 무료로 합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군조직 및 군대와 관련 있는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에게는 현역 복무자와 같은 건물의 숙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4항에서는 대체복무 지원품에 관한 내용으로 대체복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옷, 신발, 보호장비와 다른 필요물품은 복무를 하고 있는 조직에서 제공한다. 마지막 5항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보험 및 장애연금은 러시아 연방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한다.

대체복무 이후에는 러시아 연방 예비군에 편입되나 군사훈련에는 소집되지 않으며 대체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로 일한 기간만큼 향후 업무경력으로 인정된다.

II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러시아 대체복무제는 연방 헌법 59조 3항 '러시아연방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내용에 근거하여 병역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시민들에게 있다. 이를 실행하는데 기

준이 되는 법으로는 대체복무법으로 대상 범위는 18~27세의 현역복무 대상이고 그 기간은 현역복무 1년보다 긴데 대체복무지에 따라서 군사기관 및 조직과 관련한 복무지에서는 18개월이고 정부조직 및 행정기관 등의 복무지에서는 21개월이다. 신청조건 및 방법으로는 병역근무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에 반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서에 기술 및 설명을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들도 첨부할 수 있다.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들을 토대로 대체복무 검토위원회는 신청자의 입회하에 검토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하에 대체복무를 승인한다.

러시아는 대체복무제도는 1939년 폐지 이후, 1993년 국민투표로 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에 의해 그 권리가 확립되었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과 장치가 없어 실제로 시행되지 않다가 2002년에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법률 효력이 발행하여 제도가 시행되었다. 1993년에 권리는 확립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된 시기는 22년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해보면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지만 종교적 병역 거부에 따른 병역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합의를 위해서는 신념이나 종교사상의 확실한 검증을 위한 절차와 관련법률 마련에 고심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서울신문(2018), 「러시아 복무기간, 현역의 1.5배... 한국에 적용하면 최장 3년」, 2018. 6. 28.

세르게이 포노마료프(2004), 「러시아 대체복무의 허실을 밝힌다.」, 당대비 평 27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2011), 「Responses to Information Requests(RIRs)」, 2011. 11. 14.

러시아 국방부(접속일 2018. 10. 16), <https://han.gl/AOt8m>

세계법제정보센터(접속일 2018. 10. 16), <https://han.gl/VTmtK>

위키문헌(접속일 2018. 10. 16), <https://han.gl/LV12y>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접속일 2018. 10. 16), <https://han.gl/XcYUZ>